

울산광역시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78
----------	-----

발의 연월일 : 2011. 12. .
발의자 : 김순점, 김지근, 이효상, 신성봉, 권태호,
김영길, 서경환, 정현희, 고호근, 황세영

1. 제정이유

-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한편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도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를 위한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구민들의 효의 중요성 인식과 장려 및 지원 노력 등 책무(안 제4조)

다. 효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효의 달 제정운영(안 제5조)

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효행교육, 효 문화 확산 홍보 강구 등(안 제6조)

마. 효행장려를 위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보조금 지원 등(안 제7조, 8조, 9조)

바. 지원된 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안 제11조)

사. 경로효친과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표창(안 제12조)

3. 근거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축제, 이벤트, 교육활동 등 확산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의 효행 장려와 관련된 사업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7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안연월일 : 2011. 12. 08(목)
- 제안자 : 김순점 의원 외 명
- 위원회회부 : 2011. 12. 13(화)
- 위원회심사 : 2011. 12. 16(금)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검토보고서로 대체)

가. 제안이유

-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도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효행장려를 위한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구민들의 효의 중요성 인식과 장려 및 지원 노력 등 책무(안 제4조)
- 효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효의 달 제정운영(안 제5조)
- 초 · 중 · 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효행교육, 효 문화 확산 홍보 강구 등(안 6조)
- 효행장려를 위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보조금 지원 등(안 제7조, 8조, 9조)
- 지원된 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안 제11조)
- 경로효친과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표창(안 제

12조)

4. 근거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영호)

- 본 조례안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순점의원 등10명이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핵가족화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와 경로사상이 사라져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로 효행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